

##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(영업소폐쇄)

### 공시송달 공고

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) 및 제6조(영업의 신고 등)를 위반한 영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2조(영업허가취소 등)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(영업소 폐쇄)하였으나, 주소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5년 2월 6일

## 서대문구청장

### 1. 공고내용

업종 (신고번호)	업소명 (영업자명)	소재지	위반내용	처분내용	처분일
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(2020-0066786)	명동글로벌 (P*M)	증가로2안길 25-9 (연희동)	영업시설물 전부 철거	영업소 폐쇄	2025. 2. 6.
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(2020-0105908)	위고케이오 (김*희)	연희로 192 (연희동)			
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(2021-0066877)	주식회사 리연바이오키미칼 (장*원)	연세로 50 (신촌동)			
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(2022-0080584)	굿굿즈 (장*경)	신촌로 25 (창천동)			
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(2021-0066828)	파이브에이엠 (조*람)	신촌로 25 (창천동)			
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(2021-0066162)	(주)허쉬글로벌 (허*구)	신촌로 25 (창천동)			

2. 공고기간 : 2025. 2. 6. ~ 2025. 2. 21.

### 3. 고지사항

-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,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,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,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4. 문의 :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(담당자 김민희, ☎02-330-8478)